

제 293 호

1972. 10. 19.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상무부  
 편집: 공보실 공보팀  
 전화: 73-7834  
 인쇄: 서울특별시 중앙인쇄소

시

보

자

제

○ 목 차

제 1251호	서울특별시 순정림의정규제	
	영취의문유적중 서지유적.....	3

1. 시 양쪽을 반드시 읽어야 함.
2. 시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여 요점을 설명함.

서울특별시

**규 칙**

서울특별시 통계연표작성규칙 제정처  
본 규칙을 개정규칙을 이에 부속한  
다.

서울특별시청 당 내 기  
1972년 10월 10일

⑨ 서울특별시규칙 제 1261 호

서울특별시 통계연표작성규칙  
행정처본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통계연표작성규칙 제정처본  
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\* 통계연표작성규칙 제정처본 제  
개정규칙 \* 일련번호를 1, 4, 11,  
12, 13, 15, 18, 20, 26, 27, 34, 35, 36  
및 41의 나, 다\*를 각각 삭제하  
고, \* 19.정차량면\*을 \* 19.정차  
량면 (노선차량면)\*으로 하고  
\* 21.주,정차량면 및 장거리차량  
면\*을 \* 21.주,정차량면 및 장  
거리차량면 (노선차량면)\*으로  
한다.

별표 2 \* 서울특별시본규칙 제정처본  
을 \* 13\*다음에 \* 14, 15, 16, 17 및  
18\*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함  
다.

일련 번호	비 안 종 원	이 용 일 조	비 고 주 의
14	과학, 농업	도, 로, 교, 통, 법	제 42 조, 19 조
15	차량면 (승양선, 일반선, 노선차량면 포함)	도, 로, 교, 통, 법	제 11 조 제 11 조의 2
16	교통정보, 도로, 비탈, 후진, 평면, 차량	도, 로, 교, 통, 법	제 23 조, 26 조
17	정차량면 (노선차량면) (정거장차, 원거리차, 이출입차, 정류장차, 길차, 대차량차)	도, 로, 교, 통, 법	제 29 조
18	신원상, 이출입차량 (정류장수역) 인원출입차량, 차량출입차량	도, 로, 교, 통, 법	제 43 조

